산업통상부

산 업 통 상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관련 수요조사 협조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부는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(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)에 따라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를 고시하고,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3.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고시에 따라 첨단기술·제품을 확인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, 연구개발특구법, 외국인투자법 등에 근거하여 기술보호, 세제, 입지,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4. 상기 관련,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별표(기술목록) 개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조사기간 : 2026.11.4. ~ 11.18.
나. 조사기관 및 자료제출처 : ㈜네모아이씨지(031-781-7175) / hkkim@nemoicg.com
다. 조사방식 및 대상 : e-mail 설문조사 / 산업분야별 협·단체 관계자 및 회원사

붙임 :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별표 개정 수요조서(별송) 1부. 끝

산업통상부장관

수신자 산업별 협·단체장,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

주무관	**정승원**	과학기술서기 전결 2026. 11. 4. 관(산업기술정 책과장 직무대 **한해원** 리)
협조자		

시행 산업기술정책과-1508 (2026. 11. 4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) / http://www.motir.go.kr

전화번호 044-203-4518 팩스번호 044-203-4743 / tmddnjs1511@korea.kr / 대국민 공개